

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1. 13 선고 2020나17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한근

피고, 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홍종영
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제화

변 론 종 결 2020. 10. 7.

판 결 선 고 2021. 1. 13.

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. 5. 22. 선고 2019가합1021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(이하 ‘참가인’이라 한다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7.

3. 체결된 매매계약을 628,772,9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28,772,918원

및 그 중 572,259,998원에 대하여 2019. 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인정 범위 관련

피고는,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는바(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0754),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액수를 다투지 아니하였고,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사해행위 인정 여부 관련

1)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와 중진공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는 자금 유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기초사실과 을 제2호증, 을가 제3,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

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,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18. 6. 7. 기준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가 6억 원 이상 낮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(2,472,225,000원)으로 받은 참가인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부동산에 비하여 환가가 어렵고 그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, ③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까지 중진공에 대한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일수는 총 5일에 불과하고, 달리 위 채무의 변제가 시급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, ④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진공에 대하여 매월 부담하고 있던 이자액은 월 700만 원 정도였는데,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차임은 월 1,600만 원인바, 참가인으로서 오�히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 점, ⑤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신규자금을 융통하였다거나 변제자력을 강화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참가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참가인의 중진공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정당한 가격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,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, 판사 이승훈, 판사 권노을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세종특별자치시

대 6248㎡

2. 세종특별자치시

대 327㎡

3. 세종특별자치시

대 836㎡

4. 세종특별자치시 호[도로명주소] 세종특별자치시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교육연구시설

1층 1251.07㎡

2층 1170.71㎡

지1층 414.48㎡

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비실 12.13㎡, 꺾.